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발전 방안(III)

— 외국제도와의 비교연구 —

박 노 형(고려대 법대교수)

6) 반덤핑 조치의 부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덤픽수출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에서 해석된 대로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질 수 없다. 다만, 달리 GATT의 다른 적절한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조치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가. 잠정조치

조사기관은 최종결정에 의한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덤픽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조사기관이 반덤핑조사 절차에 따라 덤픽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예비공정결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내리고 반덤핑조사의 기간중에 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에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가 부과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픽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정관세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반덤핑관세에 상당하는 현금공탁이나 보증과 같은 담보(security)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반덤핑 절차의 개시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될 수 없으며, 4개월부터 최장 6개월 동안의 기간에만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 덤픽의 전력이 있거나 수입자가 수출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덤픽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때, 또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량의 덤픽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적 반덤핑관세(definitive anti-dumping duty)는 반덤핑조사의 개시후 잠정조치의 부과전 90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나. 가격인상의 약속

수출자가 조사기관이 만족할 정도의 내용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에 대한 덤픽가격으로

의 수출을 중단한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한 경우에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고서 반덤핑절차가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가격인상의 약속(priceundertakings)은 덤픽마진을 제거하기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덤픽마진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인상의 약속은 수입국 조사기관이 덤픽과 피해에 대한 예비공정결정을 내린 후에 수출자에게 요구되거나 수락될 수 있다. 수입국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은 등의 비현실적인 사정 또는 일반적 정책적인 이유로 가격인상의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인상의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도 조사기관이나 반덤핑조사의 대상 수출기업 일방은 반덤핑조사가 완료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덤핑조사의 최종결정이 부정적인 경우에, 예컨대 덤피ング이나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격인상의 약속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물론 이러한 최종적인 부정적 결정이 부분적으로나마 가격인상의 약속에 기인할 때는 예외이다. 이 경우에 조사기관은 합리적 기간 동안 가격인상의 약속이 지속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덤피ング과 피해의 궁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격인상의 약속은 지속되어야 한다.

수출자가 가격인상의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국은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라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따라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약속의 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잠정조치가 부과된 날의 90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확정관세(definitive duties)가 부과될 수 있다.

가격인상의 약속은 그동안 EC에서는 적극 활용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의회의 거부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다. 가격인상의 약속을 통하여 수출자는 가격인상에 따른 덤피ング이익이 상쇄되는 반면에 인상된 가격만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반덤핑조치의 기본목적인 경쟁조건의 보호보다는 덤피ング수출자의 반경쟁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시에는 그 이익은 수입국의 재정이 된다.

다. 확정 반덤핑 관세

덤피ング, 실질적 피해 및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수입국 또는 관세지역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반덤핑 관세를 덤피ング 마징의 전액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상의 반덤핑 관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수입국 당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보다 낮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

(i) 반덤핑 관세부과의 대상

반덤핑관세는 덤피ング 및 그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수입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가격인상의 약속이 수락된 수출자에 대하여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국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공급자들(suppliers)을 지정하여야 하나, 동일한 국가에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될 경우에 수입국은 개별적인 공급자들 대신에 해당 공급국(supplying country)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경우에 수입국은 관련된 모든 공급자나 관련된 모든 공급국을 지정할 수 있다.

국내산업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독립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때에는 반덤핑관세는 해당 지역의

최종적인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만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국의 협약에 의거하여 반덤핑관세의 이러한 지역적 부과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그 특정지역에 대한 덤피ング수출을 중지하거나 가격인상의 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장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또한 해당 지역의 특정 생산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입국 당국은 제한없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ii) 반덤핑 관세의 결정

반덤핑관세는 반덤핑조사에서 확인된 덤피ング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에서 부과되는 경우에 반덤핑관세 납부의무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반덤핑관세 지불의 확정적 결정은 통상적으로 반덤핑관세액에 대한 최종평가의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반덤핑절차의 완료 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덤피ング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예치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세평가는 실제로 그 기간동안의 덤피ング마진을 다시 조사하여 확정하게 된다.

반덤핑 관세액이 장래적 기초(prospective basis)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징수된 반덤핑관세에 대한 즉각적인 환급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자에 의한 환급요청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실제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액의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U의 경우와 같이 반덤핑절차의 완료 후에 수입될 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액을 환급하게 한다. 환급결정이 있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이 이행되어야 한다.

(iii) 반덤핑 관세의 환급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 기초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반덤핑관세의 환급은 최종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덤핑관세액이 장래적 기초(prospective basis)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덤핑관세액이 장래적 기초(prospective basis)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징수된 반덤핑관세에 대한 즉각적인 환급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자에 의한 환급요청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실제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액의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C의 경우와 같이 반덤핑절차의 완료 후에 수입될 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액을 환급하게 한다. 환급결정이 있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이 이행되어야 한다.

(iv) 표본조사의 경우

반덤핑조사는 해당 국가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덤핑조사에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또는 관련된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표본(samples)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상품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사가 조사기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들에게 개별적인 덤핑마진이 결정되어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표본의 방법으로 반덤핑조사를 제한하여 수행한 경우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반덤핑관세(all-other rate)는 조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margin of dumping)을 초과할 수 있으며, 반덤핑관세가 장래적 정상가격(prospective normal value)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에 반덤핑관세는 조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적으로 조사되지 않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 사이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다.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영(0)의 마진 및 미소의 마진(de minimis margin)과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계산된 마진은 무시하여야 한다.

(v) 신규 수출자의 경우

반덤핑조사 기간 중에 수출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없음을 증명한다면 이들에게 기존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

이러한 신규수출자(new shippers)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한 검토(review)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절차의 진행 중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 이러한 별도의 검토절차에 따라 덤팡이 결정되면 반덤핑관세가 검토개시일에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은 관세평가(appraisement)를 유보하거나 그러한 소급적 부과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b. 반덤핑 관세의 소급적용

잠정조치와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각각 반덤핑협정에 따른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소급적으로 확정반덤핑관세(final antidumping duties)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피해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덤피ング수입의 영향으로 피해의 결정이 내려졌을 피해위협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확정반덤핑 관세는 잠정조치의 적용일로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덤피ング수입의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의 대량의 덤피ング수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덤핑관세가 잠정조치의 부과전 90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잠정조치가 실효된 경우에는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일과 그 실효일 사이의 기간에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확정반덤핑관세가 잠정반덤핑조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정수되지 않으나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불되거나 재산정되어야 한다.

c. 반덤핑관세의 적용기간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시키는 덤피ング(injurious dumping)의 효과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한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수입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의 제거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기간 및 한도로 부과될 수 없다.

자동실효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가격인상의 약속은 부과되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즉, 조사기관이 반덤핑관세 부과의 종료로 덤피ング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반덤핑관세는 부과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자동실효 조항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실은 5년이 경과한 뒤에도 여전히 반덤핑관세가 유효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라. 반덤핑조치의 우회방지조치

반덤핑관세는 특정 수출국가의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러한 반덤핑관세의 특성에 유의하여 최근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기업들이 상품의 특성을 변경하거나 동 상품의 관련 부품의 조립이나 생산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여 기존의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과 EC는 새로운 반덤핑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위와 같은 경우에 확장하여 부과하고 있다. EC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EC에서 조립된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 i) 조립된 상품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ii) 조립작업이 덤피ング기업과 관련되고 동 작업이 반덤핑조사의 개시후에 시작되고, iii) 조립된 상품의 부품가액의 40% 미만이 덤피ング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원산지일 경우이다.

GATT패널은 EC의 반덤핑관세의 우회방지규정(anti-circum-

vention rule)의 EC의 동종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세로서 내국인대우에 관한 GATT III 2조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미국은 반덤핑관세의 적용대상인 상품의 부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로서 국경에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반덤핑관세의 확장적 부과는 별도의 반덤핑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에 관한 GATT규범 그 자체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UR협상에서 덤피ング조치의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에 관한 규정이 논의되었지만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WTO창설협정의 챕터 시 같이 챕터된 각료결정은 WTO 체제의 반덤핑위원회가 우회방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이나 EC는 그들의 우회방지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7) 반덤핑 조치의 재심 및 사법적 심사

가. 반덤핑 조치의 재심

반덤핑관세는 동 조치의 계속적인 부과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합리적 기간(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 경과한 후에 이해관계자가 재심(review)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면 검토된다.

이해관계자가 반덤핑관세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합리적 기간은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수입국 조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이다. 재심은 동 조치의 자동실효일자 전에 개시되고 통상적으로 일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반덤핑관세의 재심의 결과 그 계속적인 부과가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그 부과의 종료나 변경으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동 조치는 즉각 종료된다.

자동실효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조사기관이 반덤핑관세 부과의 종료로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반덤핑관세는 부과후 5년이 경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실효조항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재심은 동 조치의 자동실효일자 전에 개시되고 통상적으로 일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WTO의 출범이전에 유효한 반덤핑조치에 대하여도 자동실효조항이 적용된다.

이들 반덤핑조치는 WTO의 출범일에 부과된 것으로 의제된다. 현재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현존의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WTO의 출범일을 기점으로 5년의 자동소멸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C는 이미 자동실효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나. 반덤핑 조치의 사법적 심사
반덤핑법을 제정한 회원국은 반

덤핑관세의 최종결정과 그 재심(review)에 관한 신속한 심사 등에 대하여 사법적, 중재적 또는 행정적 법정 또는 절차(judicial, arbitr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덤핑관세의 최종적 부과결정과 동 조치의 연장 등의 결정은 수입국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적 심사는 반덤핑관세의 결정과 재심을 담당한 기관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8) 분쟁해결 절차

가. 반덤핑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반덤핑협정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을 받는다. 즉, 반덤핑조치의 부과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협의가 수행되며, 협의가 실패하면 해당 회원국은 잠정조치의 부과를 포함한 분쟁사안을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DSB)에 부탁할 수 있다.

제소국의 요청으로 분쟁해결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분쟁사안을 검토할 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반덤핑협정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발생한 이익이 여하히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는 가 또는 반덤핑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나타내는 제소국의 서면진술서, (b) 수입국 당국이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입

수한 사실들, 패널의 활동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패널의 겸토가 수입국 당국이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입수한 사실들에 국한되는 점이다.

나. 분쟁해결 절차상의 패널의 역할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설치되는 패널은 사안이 사실관계의 평가에 있어서 조사기관의 사실관계의 확정이 올바른지(proper) 또는 사실관계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인지(unbiased and objective)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기관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우, 패널은 자신과 다른 결론이 유출되더라도, 조사기관의 사안의 사실관계의 평가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의 특정 반덤핑규칙의 적용이 국제법상 관습법원칙에 따른 해석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패널은 그러한 반덤핑규칙을 적용한 수입국을 반덤핑협정의 위반으로 평결할 수는 없다. 반덤핑절차에 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 겸토기준의 설정은 미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결정이 명백하게 반덤핑협정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패널은 수입국의 관련조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UR협상에서 반덤핑절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조사기관의 반덤핑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는 여전히 넓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조사기관의 재량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덤핑마진의 계산과 피해의 결정에 대한 분쟁의 DSB에 대한 제소는 제한될지 모른다. 실제로 GATT패널은 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었다.

9) 결 어

WTO체제의 반덤핑협정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반덤핑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대폭 해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979년의 동경라운드 반덤핑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EC의 관행을 대체로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분쟁의 검토기준, 원가미만의 판매 및 누적적 피해의 인정 등은 미국과 EC의 요구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부과되는 우회방지관세의 적법성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차후 다시 협상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이나 EU의 집중적인 반덤핑관세의 적용대상인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한 대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WTO체제의 반덤핑협정은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의 계산에 있어서 그 해석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수입국의 조사기관은 회계의 목적상 덤프수입

에 할당될 이윤과 조업개시비용의 상각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명백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반덤핑조치의 규범성 강화를 상쇄시키는 새로운 규정도 있다. 예컨대, 원가미만의 판매에 관한 규정은 덤프마진을 인위적으로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미소의 원칙(de minimis rules)과 자동실효조항(sunset clause)은 대수롭지 않은 경우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조치의 결정을 주저케 할 것이다.

이 점에서 WTO체제의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에 관련된 WTO회원국들의 분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의 채택은 수입국 조사기관의 자의적 재량의 적용을 수용하는 점에서 관련 WTO회원국의 분쟁해결절차에의 부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의 특별한 기준은 일응 미국의 수입국으로서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반덤핑규정을 입법·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출국가로서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 전까지는 반덤핑관세가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EC를 비롯한 선진구들이 일본이나 한국 등의 아시아권의 신흥공업국이나 동구유럽의 비시장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수입

의 규제수단으로 효과적이었다. 선진국에서의 반덤핑관세의 적극적인 활용은 한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동일한 자극을 주게 되었으며, 이제 40여 국가들이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앞으로 WTO체제에서 반덤핑절차의 자의적인 발동이나 반덤핑관세의 보호주의적 부과가 얼마나 제한될지는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WTO체제에서의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지역적인 시장통합으로 보다 많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됨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들 지역통합에 있어서 덤프수출된 상품은 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시장으로 역수입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반덤핑관세에 비교하여 그동안 주목을 덜 받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UR협상에서 보다 보완되게 되어 그 동안의 반덤핑관세의 보호무역주의의 역할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체제에서의 반덤핑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되고 또한 WTO체제에서 자유무역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덤프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보다는 WTO규범에 일치되는 공정무역행위가 보다 일반화될 것이

기 때문이다.

셋째, WTO의 반덤핑협정이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결과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반덤핑법을 입법·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들 새로이 반덤핑법을 적용하는 회원

국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이 점에서 UR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물론 WTO 체제에서 새로이 부딪히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요구된다.

구된다고 본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첫 개별협정인 반덤핑협정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WTO체제에서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어해설

회로부품

회로부품(circuit component)이란 電流나 자류의 통로상에서 전기적 자기적 제어기능을 갖는 부품·장치를 말한다.

전류나 자류의 통로를 일반적으로 회로라고 하는데, 회로부품이란 회로상에 전류나 자류가 흐르는 適期의 어떤 부분에서 전류나 자류를 제어하는 부품·장치로서 전압과 전류 또는 자류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장치·부품 등을 말하며, 集積회로에 있어서는 素子의 기능 등을 결합해 신호 또는 에너지처리기능이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부품은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회로부품, 機構부품, 장치 배선부품, 진동 음향부품, 기억부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회로부품은 C, R, L류 즉 콘덴서, 저항기 그리고 코일과 트랜스(인덕턴스부품)를 말한다.

콘덴서에는 각종 플라스틱 필름을 금속과 함께 감거나 금속화 플라스틱 필름을 감아 만든 플라스틱 콘덴서, 티탄산바륨계 세라믹 또는 산화티탄계 세라믹으로 된 강유전체로 만든 세라믹콘덴서, 알루미늄이나 탄탈룸 등의 금속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시켜 그 피막을 유전체화해 만든 전해

콘덴서, 유전특성이 우수하며 경시변화가 거의 없는 마이카(mica)를 유전체로 사용한 마이카 콘덴서 등이 있다.

또 저항기는 固定저항기와 可變저항기로 나누며, 인덕턴스부품에는 코일을 비롯해 트랜스(변성기)가 있으며 트랜스는 저주파트랜스, 중간파트랜스, 선로형 트랜스 등이 있다.

회로부품은 범용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규격을 정해놓고 있다.